

언론중재위원회 창립 40주년 기념 좌담회



- 주제**
 언론중재위원회 40년 역사에 대한 평가와 전망
- 기획의도**
 위원회 창립 40주년을 기념하여 언론조정중재 제도 및 위원회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함
- 개최일시**
 2021년 3월 4일(목) 10:30 ~ 12:00
- 사회자**
 제정임 (세명대학교 저널리즘스쿨대학원장)
- 참석자**
 박용상 (前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前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김용주 (前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총장)
 강영수 (인천지방법원장)
 박홍기 (서울신문사 편집이사·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회장)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 좌담회 대담 전문을 수록하기에는 지면이 부족하여, Q&A 형식으로 참석자들의 주요 발언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좌담회 사회를 맡은 제정임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대학원장입니다.

언론중재제도가 도입되고 언론중재위원회가 설립된 지 무려 40년이 흘렀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습니다. 오늘날 언론조정중재제도가 가장 중요하고도 효과적인 언론피해구제 수단으로 정착하기까지 언론중재위원회에 몸담았던 중재위원들, 사무처 직원들, 언론학자와 법률가, 정책입안자들의 연구와 노력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서울 제4중재부 중재위원으로 참여했는데요, 40년 역사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낍니다.

오늘 이 자리는 언론중재제도와 언론중재위원회의 지난 40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조언을 구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좌담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박용상 전 위원장님께 언론중재위원회 설립 배경에 관하여 여쭙겠습니다. 1980년 제정된 언론기본법에서 언론중재위원회와 반론권을 도입하도록 제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제안하시게 된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용상

1980년 언론기본법에서 반론권을 받아들이고,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10.26.사태 후 신군부가 들어서면서 언론통폐합이나 언론인 해직 사태가 발생하는 등 언론을 통제하던 시대에 언론중재위원회가 설립되었기 때문에 세간의 많은 의혹을 샀습니다.

언론기본법의 초안은 제가 작성하였습니다. 당시 독일 언론법을 기초로 '언론의 자유와 공적 과업'이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직후였기에 당국에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당시 언론윤리위원회법이 있었습니다. 언론을 옹호하기 위해 모든 언론보도를 심의하여 사과, 정정, 해명을 강제하고 응하지 않으면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였는데 언론계의 강력한 반발로 효력이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당국은 이 언론윤리위원회법을 부활시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은 불가함을 밝히고, 언론의 공적 책임을 강조하는 독일 법제를 바탕으로 공영방송제도와 방송위원회를 처음 도입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언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써 반론권과 언론중재위원회의 설립을 제안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언론기본법이 악법인 것처럼 알려졌지만, 법안을 살펴보면 대체로 위험적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반대한 것은 언론사가 대중을 선동하거나 하는 경우 언론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부분이었는데 제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에 포함되었습니다. 그 외에 언론중재제도나 공영방송에 관한 내용은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던 것입니다.

반론권을 규정할 때, 저는 독일의 예를 따라 반론보도청구권으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반론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정정보도청구권으로 이름이 바뀌어 입안되었습니다.

또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창설 당시에 본연의 업무는 조정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론조정위원회라는 이름이 언론을 통제(regulate)한다거나 조절(adjust)한다거나 하는 의미로 읽힐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 업무와 다르게 중재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민 끝에 붙인 언론중재위원회라는 명칭이 아직까지도 이어진 것입니다.

다음 질문은 참석자 모든 분께 드리겠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사건처리건수는 1981년 도입 당해에는 청구건수 44건에 피해구제율 39%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10년 주기 통계를 보자면 1991년도 청구건수 220건에 48.1%의 피해구제율, 2001년도 659건에 62.3%, 2011년도 2,124건에 71.3%이며, 작년에는 3,924건에 68.7%입니다. 양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효율적인 언론피해구제제도로 발전, 정착해 왔다고 보이는데, 언론조정중재제도나 언론중재위원회의 성과는 무엇이고, 미흡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흥기

언론중재위원회의 40년을 축하드립니다.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통계에서 알 수 있듯 언론중재위원회 설립 초기에는 기자들이나 시민들이나 위원회 제도에 대해 잘 인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언론의 힘이 아주 강했고, 일반 시민들도 자신의 불이익을 언론에 호소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05년 인터넷신문이 조정대상 포함되는 등 많은 변화를 통해, 피해자들이 법원에 가기 전에 피해를 호소하고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간 3천 건이 넘는 조정건수를 보면 알 수 있듯 이제는 아주 좋은 제도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김용주

우리 위원회의 설립 근거는 언론기본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주화과정을 거치면서 언론기본법 폐지가 결정되었을 때 위원회 존재 문제가 거론되었고, 다행히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위원회가 존치되었습니다.

일각에서 언론중재위원회가 언론을 통제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음에도 우리 위원회가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중재위원들이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셨던 덕분이고, 또한 중재부 구성에 현직 법관이 참여하였던 점이 국민이나 언론에 신뢰를 주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회 설립 초기에는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이 아주 미미했습니다. 조정이나 중재라는 용어의 혼란도 있었고, 언론기본법상 정정보도청구권이 실제로 반론권이었다는 것을 대법원에서 확인해 주기도 했습니다. 조금씩 법률을 보완하고 제도를 발전시켜 2005년 단일법 제개정에 이르러 이제는 제도가 뿌리를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매체가 다변화되고 1인 미디어 시대에 걸맞게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사건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6월에 어떤 연예인이 납치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금품을 빼앗기고 새벽에 풀려났는데, 스포츠신문을 비롯해 모든 언론이 며칠 동안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나체사진을 찍었다는 등 선정적인 내용이 아무 근거 없이 보도되었는데, 연예인은 신원노출을 우려하여 일체 대응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매니저의 인터뷰에서 납치범보다 무서운 것이 신문이다, 26개사 언론과 싸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개인이 피해를 입지만 호소하기 어려운 이러한 사각지대에도 위원회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윤여진

언론인권센터는 언론피해구제를 위해 2002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언론중재 위원회와는 토론회도 많이 하고 어떻게 보면 각을 세우기도 하였는데, 이렇게 40주년을 축하하는 자리에 함께 토론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보도피해자를 상담하고 피해구제를 하면서, 언론중재제도가 유용하기도 하지만 정말 피해자 입장에서 서 있는 것이 맞느냐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2005년 언론중재법이 만들어질 때도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슈가 되었지만 언론중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자는 식으로 결론이 났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를 잘 활용하면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언론사를 같은 선상에 놓고 형평성 있는 중재가 가능한

것인지가 의문입니다. 피해자의 유형도 다양한데, 일반인에 비해 언론인이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고, 국가기관과 언론인의 경우에는 전자가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의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피해구제의 신속함 때문에 반론을 중심으로 하는데 과연 피해구제로서 충분한 지 의문입니다. 제도의 태생적 한계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정정보도를 받으려면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고, 손배액도 너무 적습니다. 실질적으로 피해를 배상받았다고 하기는 부족하고, 조정합의를 하지 않고 법원에 가는 경우 법원에서 인용위 조정을 거쳤는지 물어보고 위원회가 정한 손배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질적 피해구제와 거리가 멀고, 언론인권센터 입장에서는 언론중재제도는 언론사를 위한 제도가 아니냐 하는 의심도 있습니다.

강영수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을 통제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에서 만든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있었지만, 당시 반론권 도입은 획기적인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로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고 어떻게 보면 신군부가 들어서며 언론의 반대를 잠재울 수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초창기에는 반론보도청구권을 정정보도청구권으로 표현하는 등 혼란이 있었지만 수차례 법이 개정되면서 이제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습니다.

윤여진 이사께서는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상당수가 언론인이나 언론학 교수이고, 국가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피해구제가 아니라 언론의 면책을 위한 기구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가지신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제가 2년간 중재부장으로 근무할 때를 돌이켜보면, 법관의 특성상 피해구제의 관점에서 접근하기 쉽고 제가 중재부에 있을 때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2010년 경 탈북 소년에 관한 기사가 미담기사로 실린 적이 있습니다. 탈북자가 국내에서 잘 지내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에서 이름과 사진이 모두 공개되었는데, 문제는 북한에 남아있는 탈북민의 가족들이 이 기사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신문사는 당시 관행에 따라 좋은 의도로 낸 기사라고 항변하였지만 중재부에서 직권으로 1,500만원의 배상을 결정하였고 신문사도 받아들였습니다. 당시로서는 매우 큰 금액이었고, 중재위원으로서 이와 같이 피해구제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년간 중재위원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짧게 소회를 말씀드리면, 언론중재위원회가 오해를 받으며 미미하게 시작

되었으나 지금은 만개하여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언론피해구제기구로서 자리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고생하신 중재위원분들과 직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윤여진 이사께서는 언론중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윤여진

언론피해자들을 상담하다 보면 위원회에 다녀오신 분들이나 위원회 절차를 이용하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통해 중재위원들이 정말 성심성의껏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고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하신다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언론중재제도에 대해 개선점을 말씀드리면, 일단 중재건수가 많지 않다는 점이 있습니다. 중재가 주는 무게감이 있고 준사법기관으로서의 권위도 있지만, 중재건수도 많지 않고 조정이 주 업무이므로 언론분쟁조정위원회라는 명칭이 더 적합하지 않은가 합니다.

또 현재 중재위원 구성이 피해자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구성은 아니라고 봅니다. 언론피해자의 양상은 아주 다양한데, 언론인과 법조인 중심의 중재부 구성은 피해구제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손해배상액을 현실적으로 높이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야 합니다. 뉴미디어 시대의 피해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므로, 열람차단청구권의 도입으로 위법한 기사를 차단하고 삭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언론사 측은 어떠한 입장이신지가 궁금합니다. 박흥기 이사께서는 세월호, 구원파 관련 조정사건에서 서울신문 온라인뉴스국장으로서 언론사 측 책임자로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인으로서 조정에 직접 참여하시면서 조정제도의 장단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흥기

언론은 조정절차에서 가해자의 입장이 됩니다. 언론은 스스로 기본적 소양을 가지고 진실되게 보도하며 정보를 전달하고 판단의 잣대를 제공해야 합니다. 언론인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오기 위해 기사를 쓰는 경우는 한 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적 제약에 의해 100%의 팩트를 확인하지 못하고 7~80%를

확인하고 보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 해도 피해를 입히려는 의도로 보도를 하는 언론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언론은 종교에 대해서는 잘 보도하려 하지 않는 편이지만, 구원파 사건 때는 세월호 사건이라는 참사와 연관되어 많은 보도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많은 언론이 '카더라' 소스를 가지고 받아 쓴 것입니다. 나중에 구원파와 유병언 회장에 대해 대체 무슨 근거로 보도를 했느냐고 물었을 때 어느 누구도 어떤 팩트에 근거해서 보도했는지 답변을 못 했던 것입니다. 서울신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페이지뷰를 늘리기 위해 시류에 편승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세월호 참사는 결국 언론의 참사였다고 반성하는 글도 썼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언론사가 보도한 1만 건이 넘는 기사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가 문제였습니다. 보도마다 반론을 실어주고 정정보도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고 언론중재위원회도 업무가 마비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통해 피해자 측과 만나서 확인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일괄 삭제하기로 합의하거나 정정보도를 일괄적으로 게재하는 방법으로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민약 기사 삭제, 열람차단청구권을 법제화하게 되면 삭제요구가 빗발치면서 세월호 사태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삭제 요청으로 언론사나 위원회 업무에 부담이 될 수 있고, 종교단체나 권력기관의 삭제청구를 상대로 언론사가 싸우게 되면 정말 힘이 듭니다. 징벌적 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 되는 언론사에서는 손해배상을 회사에서 책임지겠지만, 그와 별개로 소송을 당하는 기자가 느끼는 심리적 위축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법제화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여진 이사께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 필요성을 말씀하여 주셨고, 박흥기 이사께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법제화는 언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른 분들께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에 대해 어떤 의견이신지요?

박용상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는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어느 한 쪽이 우월하거나 소홀하게 취급되어서는 안 됩니다. 언론계와 피해자를 대변하는 입장이 모두 일리가 있고, 경청해야 합니다. 균형을 잃으면 언론 탄압이 되거나 피해구제 제도가 무력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언론피해자의 손해배상액이 너무 적다는 의견이 있어 점차적으로 손배액을 늘려가는 추세입니다. 가끔씩 1억 원이 넘는 손배액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법조인들의 노력에 맡겨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고, 대륙법에 기초한 우리의 손해배상제도 자체가 징벌적 손배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론보도가 과연 '징벌'을 받아야 할 대상인가 의문이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는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결국 징벌적 손배를 적용하는 것도 법관들이고 실무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강영수

2005년도에 손해배상청구를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때 반대의견이 많았습니다. 심리기간이 짧고, 증거 조사할 방법도 없는데 어떻게 복잡한 인과관계를 따지고 피해자의 과실까지 고려해 손배액을 산정할 수 있겠느냐, 잘 되고 있던 조정이나 중재까지도 안 될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단순히 언론중재위원회에 손해배상청구를 처리할 권한을 주는 것에도 이렇게 반대가 컸는데, 이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다고 하니 금석지감이 듭니다.

추상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한다고 피해구제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운영이 중요합니다. 제조물책임이나 특허 침해의 경우 징벌적 손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특허를 도용해서 얻은 이익을 손해로 본다거나 해서 피해액이 얼마인지 특정이 됩니다. 그러나 언론피해에 있어서는 객관적 손해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기사 때문에 영업이 안 되어 손해를 입었다거나 하는 식으로 손해액이 정확하게 나오는 경우는 일부분에 불과하고 정신적 손해로 인한 위자료가 대부분입니다. 위자료 산정은 법관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다 하더라도 그 기준이 되는 위자료 자체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입니다. 법관들의 인식이 바뀌어

위자료를 5천만 원, 1억 원으로 올리면 똑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나 언론중재위원회 등 여러 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모아서 손해의 양상을 유형화시키고, 이러한 손해는 얼마나 배상할 것인지를 연구하여 매뉴얼화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형사사건에는 약식명령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와 같이 기준을 만들어 공유하게 되면 약식명령처럼 언론피해도 빠르게 구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윤여진

모두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3배, 5배 법안이 나와도 3배가 무슨 징벌적이나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언론인권센터가 피해자를 돕는 입장이지만 언론을 가해자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언론의 역할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저희가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언론이 사회적 책임을 분명히 져야 정의도 바로 서고 신뢰도 생긴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징벌적’이라는 말이 갖는 위압감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법원 판사들의 재량에 맡기는 것에도 문제는 있을 것입니다. 피해자가 약자이고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가 높지 않은 경우 피해액이 적게 산정됩니다. 저희 단체에서 상담한 사건 중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서 진실이 확인된 사건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도해 2차 피해를 발생시킨 매체와 합의하면서 무려 93개 기사를 삭제했는데 손해배상 금액은 1,6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문체부에 등록된 2만여 개 매체가 부정적인 기사를 10건씩만 쓴다고 해도 보도의 대상이 된 사람은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도 장기간의 소송을 진행하기보다는 피해자의 인생을 위해 조정합의를 하는 것을 권하기는 했으나, 손해액이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자정능력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법원도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주

언론중재위원회는 분쟁을 조정하는 기관입니다. 분쟁 과정에서는 피해자도 보호받아야 하지만 언론사도 역시 보호받아야 합니다. 언론사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억지를 쓰는 분들도 일부지만 존재합니다.

과거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의견이 몇 차례 있었으나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이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본연의 업무는 정정보도와 반론보도가 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사열람차단청구권 도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용상

디지털 미디어로 인한 피해의 확산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인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통매체는 이제 일부분이고, 인터넷 매체를 비롯한 새로운 미디어가 문제가 됩니다. 게이트키퍼질차도 없이 1인 미디어들에 의해 보도가 확산되면서 피해가 커지는 것입니다.

위원회에서도 2015년도 언론중재법 개정안 발의에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지금 발의된 법안 중에서 당시 개정안에 들어 있던 내용이 다시 들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의 핵심은 법원이나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위법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는 열람과 검색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에서 인격권의 대세효를 인정하기 때문에 위법한 기사나 게시글을 삭제하는 것은 반드시 입법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김용주

아무리 정정보도를 하더라도 삭제가 되지 않으면 기사가 계속 노출되어 피해가 발생합니다. 기사삭제, 열람차단청구권의 입법에 찬성합니다. 또한 보도가 남아 있어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원 보도를 열람할 때마다 정정이나 반론보도문이 함께 열람되도록 해야 합니다.

박홍기

과거 정치인이었던 분이 오래 전 보도된 자신의 뇌물수수 보도를 삭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또한 과거 직장을 다닐 때 발언한 내용이 기사화 되었는데, 수년 후 퇴사한 후 재취업에 다소 방해가 될 수 있으니 기사를 삭제해

달라는 분도 계셨습니다. 신문이나 방송의 경우 보도가 되고 난 이후 굳이 이전 보도를 찾아보는 사람이 없으니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인터넷 매체의 기사는 계속 남아서 검색되고 있으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언론사도 기사삭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절차가 있습니다. 기자, 데스크, 국장이 협의해서 삭제여부를 검토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으로 강제하게 되면 기존 보도를 하나도 볼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보도 당시의 기록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필요한 경우 이미 조정절차를 통해 충분히 기사삭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삭제청구, 열람차단청구가 법제화 될 필요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법적으로 오보라고 결정된 것을 삭제하라고 한다면, 법원에서 유죄라고 확정되기 전까지 그 협의를 보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기자에게는 수사권이 없어서 수사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쓰는데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박용상

언론사의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간 자료까지 지우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이나 위원회에서 위법하다고 판단이 된 보도의 열람을 차단하라는 것이고, 이미 대법원 판례로 인격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기사 삭제가 가능하다고 결론이 나 있습니다. 없는 권리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미 존재하는 권리를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청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윤여진

언론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공인이나 권력기관을 감시하는 역할을 충분히 해 줘야 합니다. 그들이 이러한 제도를 악용할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같은 내용의 보도가 서로 다른 매체에서 수십 건씩 게재되었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기사의 열람차단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정정보도문이나 반론보도문의 크기나 분량을 원 보도와 같은 분량 내지는 절반 이상의 분량으로 하도록 의무화하거나 1면에 보도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여진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 있기는 합니다. 분량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똑같은 보도가 여러 매체에서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흥기

언론사가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게재에 인색한 것은 사실입니다. 언론인 단체에서 논의할 때에도 스스로 반성하는 부분입니다. 최근 한겨레가 오보를 1면에서 정정하기도 했고, 조선일보도 별도 코너에서 팩트체크를 하면서 오타부터 정정, 반론까지 실어주기도 합니다.

언론사들도 바뀌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도 보도된 부분의 글자 수까지 따지면서 보도문 분량을 정하기도 하는데, 무조건 원보도와 같은 분량이나 절반 분량으로 하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법으로 강제하기보다는 언론 스스로가 이러한 법안까지 발의되는 현실을 직시하고, 피해자 입장을 역지사지해서 2단 기사든 3단이든 과감하게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주

위원회 초창기에는 정정이나 반론보도로 합의하고서 활자를 아주 작게 해서 눈에 띄지 않게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문과 제목의 활자 크기까지 합의서에 넣게 되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는 법으로 보도문의 분량을 강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합의가 다 된 상황에도 제목의 크기나 활자 때문에 조정합의가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중재부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 적절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을 언론사가 받아들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강영수

분량까지 컨트롤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정정, 반론보도에 대해 지면의 위치나 방송 순서를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특정해 주는 정도면 족하다고 봅니다.

박용상

정정보도, 반론보도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도 있고, 언론 측에서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기준으로 시행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언론사의 협조 없이 법조문 하나로 해결되기는 어려운 문제이고, 언론사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위원회의 업무 개선과 발전을 위해 제언해 주실 내용이 있을까요?

윤여진

피해 당사자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의 1/5 이상을 언론소비자 및 시민단체 추천 몫으로 할당하여 중립성 및 신뢰성을 높여야 합니다.

김용주

중재위원 위촉권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위원회는 문체부 유관기관으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예산은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충당하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원화된 구조 때문에 위원회 예산을 국가 일반회계로 편입하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재원을 분리한 것은 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의심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배려한 것입니다. 위원회의 예산을 국가가 지급한다고 해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거나 하는 일은 없겠지만, 국민과 언론이 위원회의 중립성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제도의 근간이 무너지게 됩니다. 따라서 위원회의 예산이 국가 일반회계로 편입된다면 위원회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중재위원 위촉권자를 현행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서 대통령으로 상향하여 기관 위상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위원회의 독립적인 사무 수행을 법에 명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박용상

현행 언론피해구제법제는 아날로그시대에 오프라인 미디어를 대상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대에 적절한 구제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해 인격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명문화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한 인격권 침해 표현행위의 피해구제를 위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댓글이 인격권이나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및 법원이나 위원회가 피해구제의 필요성을 인정한 기사와 같은 내용이 정보통신망에 확산되는 경우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명문화해야 합니다.

박홍기

언론중재위원회는 준사법기관에 가깝고, 순기능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력기관이나 개인, 단체의 청구로 언론의 위축을 초래하는 역기능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정치권에서 언론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위원회에 조정, 중재가 아닌 심판의 역할을 맡기는 것입니다. 현재 발의된 개정안들이 법제화되면 정당한 비판이나 의혹 보도를 봉쇄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고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알 권리는 심각하게 침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유롭게 책임있는 언론을 추구하는 것이 되어야 하고, 법적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지금까지 유익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공부가 많이 되었습니다. 40주년을 맞이한 언론중재위원회가 오늘 논의를 토대로 더 발전하여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언론피해구제기관으로서, 나아가 언론 피해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언론환경을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좌담회를 마치겠습니다. 🙏